

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13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8월 일

발 의 자 : 정 병 용 의원

1. 제안이유

- 가.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,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- 나.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격상하여 결정의 구속력을 높이고,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여 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며, 소위원회 구성 근거를 신설하여 안전을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 (안 제9조제1항)
- 나. 위원장 선출방식을 당연직에서 위원 중 호선하도록 변경 (안 제9조제3항)
- 다.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(안 제13조제1항)
- 라.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(안 제13조의2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하남시 조례 제 호

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자문하기”를 “심의하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,”를 “위원장 및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회”를 “2회”로 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소위원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.

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3조를 준용하며, 제2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의·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 최종 의결을 거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관련 시책을 <u>자문하기</u> 위하여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<u>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</u>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④·⑤ (생략)</p> <p>제13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<u>1회</u> 이상 개최하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9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- ----- ----- <u>심</u> <u>의하기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위원</u> <u>장 및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위원회 운영) ① ----- ----- <u>2회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3조의2(소위원회 구성 등) ①</u> <u>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</u> <u>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</u> <u>수 있다.</u></p>

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.

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3조를 준용하며, 제2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의·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 최종 의결을 거친다.